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6회 임시회(2024. 2.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4-26
----------	-------

2024. 2. 28.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깨끗한마포과)
- 나. 제 출 일 : 2024. 2. 16.
- 다. 회 부 일 : 2024. 2. 20.

2. 제출이유

쓰레기 종량제 환경부 지침 개정사항 및 종량제봉투 종류, 규격, 수수료 감면대상 기준 한정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됨.

3. 주요내용

- 가. 사업장폐기물용 종량제봉투 관련 규정 삭제
- 나.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대상자(수급권자) 한정 규정 정비
- 다. 제작·유통되지 않는 대용량 봉투(50L, 100L) 가격 규정 삭제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기타
 - 1) 입법예고 : 2023. 10. 26 ~ 2023. 11. 15. (의견 없음)
 -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규제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배경

-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 개정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반입 금지 결정 등에 따른 조례 현행화 차원의 입법 활동으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의 명확화를 위해 제출됨.

나.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19조 제1항은 일반종량제봉투를 생활과 사업장으로 구분하지 않고자 사업장폐기물용 종량제봉투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음.
이는 1일 평균 300kg 이상 사업장생활폐기물의 자체 또는 위탁 처리 가능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한 것임.
- 안 제35조의 수수료의 감면은 실제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수급권자의 대상 범위를 한정하고자 조문을 구체화 함.
- “수급권자” → “생계·의료 수급권자”
- 별표4의 종량제봉투의 가격은 현재 제작 운영중인 생활폐기물용과 특수규격봉투 가격으로 현행화 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사항과 종량제 봉투 종류, 수수료 감면 대상 변동사항 등을 반영한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서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한 경우는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를 활용하여 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되었으나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 개정으로 조업일 기준 일일 300kg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자원회수시설 반입 금지가 결정(2021. 6. 21.) 되어 사업장폐기물용 종량제봉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만 표기하는 등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이는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비용보다 사업장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저렴해서 폐기물의 감량 의지가 부족해지고 재활용 및 분리배출에 소홀해지는 문제를 배출자 처리 책임 강화 차원의 조치로 판단됨.
-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수급권자” 를 “생계·의료 수급권자” 로 개정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수급권자의 범위가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권자로 구분되어 있어 실제 수혜 대상자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한정하여 수혜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 기타 별표 개정은 종량제봉투 가격의 법률의 시인성 확보 차원의 활동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전문위원	신 준 호
주 무 관	박 철 호

[관 계 법 령]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왕겨 및 쌀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